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(안)

※ 저작재산권 양도	근 취지
공공데이터의 저 됨에 따라 공공 >	의 2(공공저작물 자유이용)가 2014. 07. 01.부터 시행되고, 비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. 10. 31.부터 시행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된 산출물을 🔲	취지에 따라 <u>○○(기관명)</u> 은/는 <u>□□(사업명)</u> 의 결과로 창작 □(사업명)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코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
	서작재산권을 <u>○○(기관명)</u> 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.
□ 저작물 표시	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.
○ 저작물명 :○ 대상 저작물 상세	정보 :
□ 양수자	
O 기관명 :	
O 주소 :	
□ 양도자	
가. 사업 책임자(대표	·자)
O 기관(개인)명 :	(인)
O 소속 :	

O 대표주소 및 연락처 :

나. 참여 인력

번호	이 름 (한자)	소 속	주 소	대상 저작물 상세정보	동의 확인
1					
2					
3					

※ "대상저작물 상세정보"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(분야, 페이지 등)으로 표시

□ 계약 확약사항

○ 사업책임자(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)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○○(기관명)는 사업책임자(공동수급체일 경우 그대표자)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가주한다.

□ 저작권의 양도 내용

제1조(공통) ① '양도자'는 본 계약 체결 후 '양도자'가 제작한 저작물 (보고서, 사진, 영상물, 음향, 일러스트, 도감, 공모전 입상작 등)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(복제권, 공연권, 공중송신권, 전시권, 배포권, 대여권 등)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○○(기관명)에게 양도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'양도자'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

제2조(확인 및 보증) '양도자'가 본 <u>()(사업명)</u>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<u>()(기관명)</u>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,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'양도자'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.

제3조(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) '양도자'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, <u>○○(기관명)</u>의 요청이 있는 경우 '양도자'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.

제4조(영상저작물 특례) 본 🔲 (사업명)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

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 한다.

제5조(초상권) 본 (사업명)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(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'양도자'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(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득하여야 하며,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·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'양도자'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.

제6조(저작인격권 유보) ○○(기관명)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□□(사업명)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'양도자'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(제한)된다.

제7조(저작인접권) '양도자'는 본 (사업명)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, 배포권, 대여권, 공연권, 방송권,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, '양도자'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,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.

제8조(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) '양도자'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·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,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'양도자'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.

제9조(분쟁해결 및 관할법원)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'양도자'와 <u>○○(기관명)</u>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.

조정에 이견이 있어,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<u>○○○○법원</u>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10조(계약의 해제) ① '양도자' 또는 <u>○○(기관명)</u>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- 1.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,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, 회사정리,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- 2.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

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,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,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.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

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2020. . .